

춘천지방법원 2019. 10. 30 선고 2019가단194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B

변론 종결 2019. 10. 23.

판결 선고 2019. 10. 3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인제군 C 지상 주택 1동 66.6m²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피고는 원고에게 2002. 10. 1.부터 위 제1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연 2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(원고는 변론기일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금액을 연

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 청구로 청구취지 변경하였음).

2. 인정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류영재

별지